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400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4000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29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식

피고, 피항소인1. B 주식회사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유제산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정주영

4. E

5. F

6. G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H

변론 종결2020. 10. 22.

판결 선고2020. 11. 12.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296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381,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각 7,749,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H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는 108,458,584원, 피고 D은 그 중 60,521,382원, 피고 E은 그 중 46,495,107원, 피고 F, 피고 G은 그 중 각 30,996,673원,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들은 그 중 각 28,261,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20. 10.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들은 위 각 28,261,732원 중 각 12,763,363원은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는 108,488,584원, 피고 D은 그 중 60,521,382원, 피고 E은 그 중 46,495,107원, 피고 F, 피고 G은 그 중 각 30,996,673원,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들은 그 중 각 15,498,3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200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들은 2008. 8. 21.부터 이 사건 2018.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L는 2006. 1. 2. 안산시 단원구 J 대 2,054.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K 조합 소유의 2,054.4분의 1,895.7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및 Y 등 소유의 2,054.4분의 158.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의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2.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위 토지 및 건물을 5,335,980,000원(=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2,176,721,677원 +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3,159,258,323원)에 매수하여 2008.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내역은 별지 <표 1-1>과 같다(설정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전까지 말소된 내역은 제외). 위 나.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내역은 별지 <표 1-2>와 같다(설정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전까지 말소된 내역은 제외).

마. 2008. 8. 2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은 전체 배당할 금액인 5,340,165,944원(= 매각대금 5,335,980,000원 + 매각대금 이자 11,704,124원 - 집행비용 7,518,180원)을 L의 채권자들에게 별지 <표 2>와 같이 배당하였다('비고'란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당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O, 피고 D, M, N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6455 등)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9. 11. 3.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10,000,000원 중 410,000,000원을 별지 <표 3>과 같이 위 O 등에게 다시 배당하는 내용의 재배당 절차를 마쳤다.

사. 한편 K조합은 L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위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아. 그러자 I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들(M, N는 제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8748)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금액은 I의 손실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I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표 4>와 같이 채권자들이 I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배당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및 피고 B, C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9723)에서 2015. 9. 1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자. I은 M, N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689)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아.항 기재 판결과 같은 이유로 M, N가 각 65,688,834원을 I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그 후 R, S는 K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배당금 상당을 변제받았다.

카. O은 2015. 10. 5.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M는

2012. 2.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N(상속분 3/17),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들, Z(상속분 각 2/17)이 망인을 상속하였다.1) N,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N는 2015. 8. 5.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들, Z이 망인을 상속하였다(상속분 각 1/7).2)【인정근거】갑 제1 내지 7,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라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 원고는 선순위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에서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 B, C, D 및 망 O, 망 M, 망 N가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결과 108,488,584원(위 제1의 아.항 기재 판결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결국 위 피고 B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108,488,58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우려면 피고 B, C, D 및 망 O이 본래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권자들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무효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배당받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3,159,258,323원에서 집행비용 4,451,514원[= 7,518,180원 × (100-40.7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와 피고 B, C, D 및 망 O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 합계 1,711,060,068원[= Q 등 21,000,000원 + 안산시 5,444,300원(이 사건 건물 당해세) + R 및 S 1,684,615,768원(= 27억 원 - 846,153,527원 - 169,230,705원, 앞서 인정하였듯이 R 및 S는 나중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채권액에서 위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에게 배당할 3억 원, 피고 B에게 배당할 2억 원, 피고 C에게 배당할 666,900,000원을 공제하여도(3,159,258,323원 - 4,451,514원 - 1,711,060,068원 - 3억 원 - 2억 원 - 666,900,000원 = 276,846,741원) D 및 망

O이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합계 187,179,531원(= 126,658,149원 + 60,521,382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B, C, D 및 망 O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집행비용, M 및 N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M 및 N는 후순위채권자로 배당받지 못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무효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M 및 N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각 230,318,428원(= 변경된 배당액 296,007,262원 - 위 제1의 자.항 기재 판결의 65,688,834원)을 배당받는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108,488,58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M 및 N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각 54,244,292원(= 108,488,584원 × 1/2)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는 M 및 N가 공동하여 108,488,584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M, N의 사망 및 한정승인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

1. 망 M의 부당이득반환채무 54,244,292원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 각 6,381,681원(= 54,244,292원 × 2/17)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 부담

2. 망 N의 부당이득반환채무 54,244,292원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 각 7,749,184원(= 54,244,292원 × 1/7)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①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381,681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8.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3)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각 7,749,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희

판사김지영

판사신세희

별지

- 1) 자녀로 AA도 있었으나 M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AB과 자녀인 AC가 대습상속하였다.
- 2) AB과 AC는 대습상속하였다.
- 3) 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망한 M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2.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들로 표시 정정을 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위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복잡하므로, 위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